

의문사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활동이 오는 6월로 마감된다. 아직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도 못하였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라서 70이 넘는 유가족들은 국회가 4차 법개정을 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지난 겨울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지냈다.

지난해 11월에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등이 발의 하였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은 국회 법사위가 두 차례나 심의를 거부하고, 운영위원회로 반려하는 바람에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에는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니라면서 운영위로 혼자 결정해서 넘겨 버렸다. 다행히 2월 18일 운영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 소관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회의장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오라고 한다.

이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심의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일주일만에 종료하고 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상규명 제한한 의문사법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422일간의 여의도 천막농성을 한 뒤인 1999년 12월 30일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월 15일 이 법을 공포하였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의문

사위가 출범한 것은 그 해 10월 17일이었다.

법 제정 당시에 주어졌던 조사기간은 6개월 조사,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한 사건 당 최대 9개월 안에 조사작업을 완료하여 종료하라는 것이었다. 막상 조사작업을 하려니 이미 2,30년 전의 사건이라 현장도 기록도 훼손되어 있었다. 설사 기록이 있다고 해도 국가정보기관들의 '보안' 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란 권한이 미약한 의문사위로서는 불가능했다. 게다가 조사 인력도 부족해 한 사건당 1명의 조사관도 배치되지 못 하였다.

결국 1차 법개정 시에는 다시 6개월을 연장했고, 2차 법개정에서는 2002년 9월 16일로 조사기한을 연장했다. 그런 뒤 2002년 11월 3차 법개정에서는 조사 기한을 최대 1년을 연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남은 게 30건이었다. 진상규명 불능 사건은 대체로 피조사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피조사기관들이 한시적이며 강제수사권도 없는 기구에다가 사건의 실체가 담긴 기록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사건 관련자들도 의문사위에 와서는 거짓말로 둘러대기에 바빴다. 핵심 관련자들일수록 더욱 그랬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의문사위는 사건 관련자들을 어렵게 수소문하여 불러다가 진술을 듣고는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의문사위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고 심지어는 법정기록마저 조작되었음을 밝혀냈고, 최종길 교수 사건

에서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당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광주대 김준배 사건의 경우에도 수배 중이었던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프락치를 동원했고, 단순 추락사가 아닌 검거 당시 경찰관의 폭행이 가해졌다는 점을 밝혀냈다. 전두환 정권의 대학생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으며 허원근 일병이 타살되어 은폐, 조작되었음을 밝혀내 국민들에게 과거 독재정권의 반인권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의문사위의 활동이었다.

그러기에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여론은 의문사위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 여론의 힘이 의문사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국회를 압박해 낼 수 있었다.

의문사위 강화해야

3년여의 의문사위 조사활동 과정에서는 단지 조사기간의 연장만으로는 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또한 보여주었다. 먼저 조사 범위가 19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과 군의문사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은 없지만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발생한 의문사 사건을 해결할 수 없던 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참고인들이나 기관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문사위의 조사 권한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었다. 가령 통화내역 확보 및 감청요청권, 계좌추적 요청권, 강제구인권,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요청권, 벌칙 규정 강화 등이 의문사위에 주어진다면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었다. 아울러 의문사 사건 조사에 있어 공소시효의 배제 및 사면 제청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양심선언이라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진실 규명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입증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수지 김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갔고, 그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비통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가.

그럼에도 이 국가는 아직도 과거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국회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구에 미약한 권한만 쥐어주려고 한다. 마치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에 의해 해체되었듯이 의문사 사건 또한 그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는 독재의 잔재세력들에 의해 어둠 속에 묻힐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요구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달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라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말은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과거의 의문사를 해결하고, 다시는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인권의 가치를 세우는 일은 정녕 중단되고 말 것인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대로 문 닫아야 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